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733호 2020. 8. 18.(화)

【조 례】

제1350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1351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1352호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1353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9
제1354호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2
제1355호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제1356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제1357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제1358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8

【공 고】

제2020-1686호 2020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58

【고 시】

제2020-137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62
제2020-138호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 ····· 63
제2020-13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68
제2020-14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73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0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및 자원봉사센터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임직원 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제2조제4호 각 목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공무원 등과 일반시민은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방법) ① ---------- ---------- ---------- ---------- ----. ---------- ---------- 시장----------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1호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공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공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을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대피 등”으로 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나.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하천 등에 대한 점검과 장비·임차 및 구입 마.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 예보·경보시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공주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의 설치	
3. 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재난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가뭄 재해 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의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주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이사비용에 한한다)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생 략)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 ② 대피등----------.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2호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컨텍센터”를 “콜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에서 “컨텍센터(Contact Center)”란”을 “조례에서 “콜센터” 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공주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컨텍센터”를 각각 “콜센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컨텍센터”를 각각 “콜센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컨텍센터”를 각각 “콜센터”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컨텍센터”를 각각 “콜센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컨텍센터”를 “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컨텍센터”를 “콜센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컨텍센터”를 “콜센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는”을 “어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컨텍센터”를 각각 “콜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경영행정의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컨텍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콜센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컨텍센터(Contact Center)”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상담·신고·건의·문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한 상담·안내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민원상담업무는 물론, 민원서비스 및 경영행정에 대한 고객관계 관리 리서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하여	제2조(정의) -- 조례에서 “콜센터”란 ---------- ---------- ---------- ---------- ---------- ---------- ---------- ---------- ---------- ----------

주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컨텍센터의 명칭은“공주시 컨텍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공주시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위치) 컨텍센터는 공주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컨텍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치) 콜센터----------. --- 콜센터----------.
제5조(기능) 컨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컨텍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5.、6. (생 략)	제5조(기능) 콜센터----------. 1. ~ 3. (현행과 같음) 4. 콜센터 ---------- 5.、6.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장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컨텍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컨텍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 콜센터 ----------.

2. 컨텍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2. 콜센터 ----------
3. 컨텍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사무실	3. 콜센터 ----------
4. 그 밖의 컨텍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부대시설	4. ----- 콜센터 ----------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컨텍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 콜센터 ----------.
② 컨텍센터 사무의 위탁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콜센터 ----------.
③ 시장은 컨텍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콜센터 ----------.
④ 컨텍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컨텍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⑤ (생 략) ⑥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컨텍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콜센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 콜센터 ----------.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컨텍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감독) ① ----- 콜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탁자가 컨텍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생 략) 4. 공익상 컨텍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위탁의 취소) ---------- 어느 ----------. 1. (현행과 같음) 2. ------ 콜센터---------- 3. (현행과 같음) 4. ---- 콜센터----------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3호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공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기부금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단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4호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공주시 자원봉사업무 소관 부서장(이하 “공무원 단장”이라 한다)과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민간인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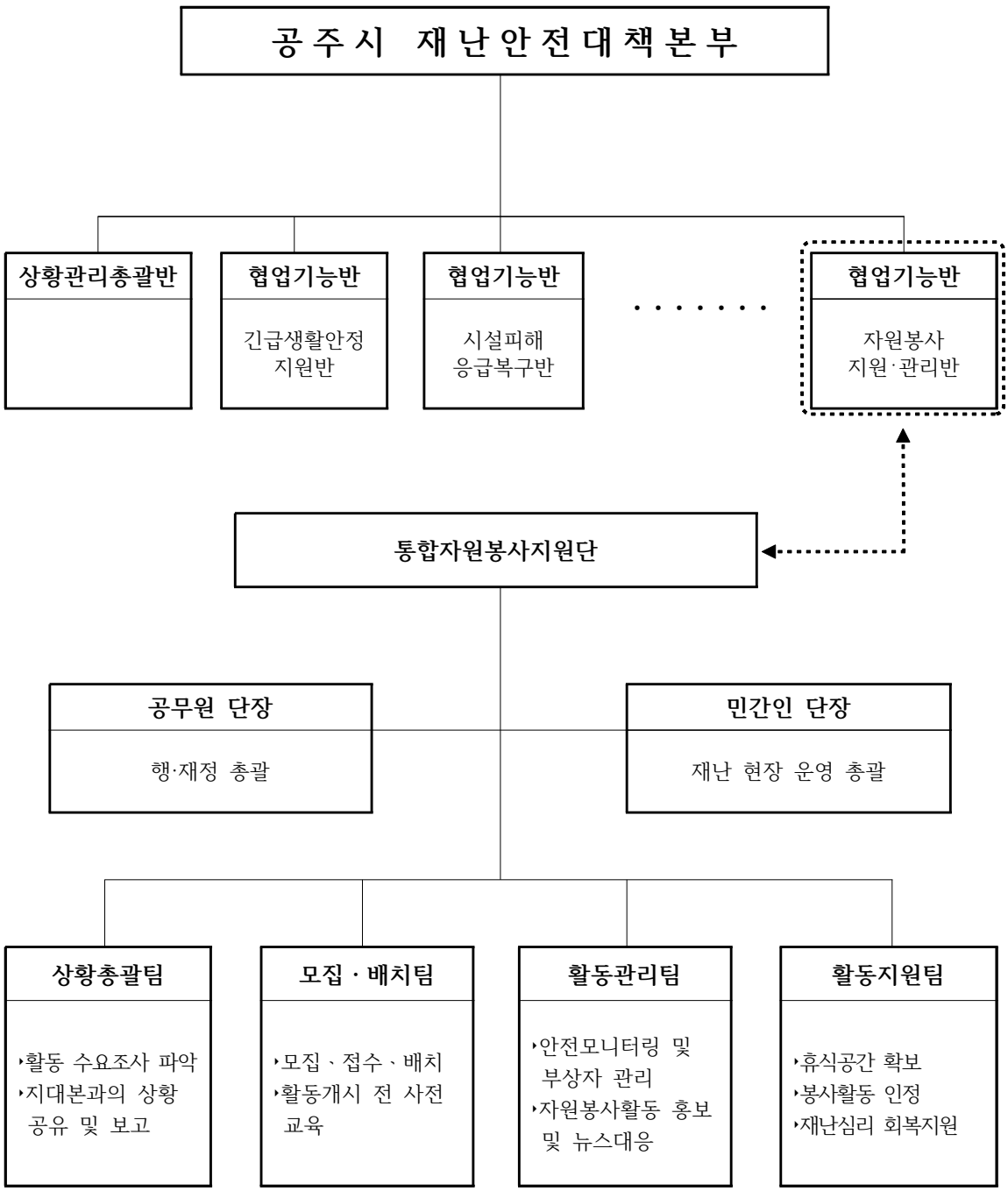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팀명(예시)	직 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공주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민간인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공주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팀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공주시 자원봉사업무 담당자 (주무관)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원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5호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제44조”를 “제41조”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모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각 읍·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41조----------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모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9조(읍·면·동 협의체) ① ------ ---------- ---------- ---------- ---- 각 읍·면·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0조(복지위원) ① 시장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삭 제>
②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면·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지역내 사회보장급여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읍·면·동장은 복지위원의 활동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의 사회보장욕구 수렴 및 보장 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복지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에 따른다. ⑧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6호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 ---------- ---------- ---------- ---------- ----------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7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10조 제1항 관련)

부과대상		부과기준(ℓ)	수집운반비(원)		처리비(원)			비고
			2021.1.1. 부터	2023.1.1. 부터	2021.1.1. 부터	2022.1.1. 부터	2023.1.1. 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1	7	8	6	8	10	
	신고대상	1	7	8	4	6	7	
	규제미만	1	7	8	1	1	1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 7. 31.)에서 의결된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20년 8월 18일

공주시 조례 제1358호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공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공주푸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공주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공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공주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식생활 지도사 양성
6. 공주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7. 공주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8.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주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공주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9.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방안 마련
10.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시설 등 과 네트워크 지원

제2장 공주푸드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주푸드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주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2.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주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공급식업무 부서장과 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과장 및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 의원
2. 공주시 학부모협의회 및 학교 영양사·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주시 농업인 단체, 지역농산물 생산자 단체, 소비자·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주시 학교·공공·복지급식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등 전문가
6. 그 밖에 공공급식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공급가격 결정 등 사업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제1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주푸드 생산) ① 공주푸드 농산물은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푸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
2. 지역순환농업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 등 공공급식의 맞춤형 식품생산
4.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5. 꾸러미 마을,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 영농법인의 직거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공주푸드 가공) 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공주푸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촌융복합사업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주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육성·지원 할 수 있다.

③ 공주푸드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권역별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주푸드 소비·유통) ① 시장은 공주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공주푸드 유통·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주푸드 식품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공주푸드 이용촉진을 위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주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공주푸드의 안정성 보장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공주푸드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절차 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급식 지원

제19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0조(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공주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주푸드의 공급 확대

4.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5.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사례 공동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시장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33조에 따른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학교급식 지원

제23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24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공주푸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26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8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제26조에 따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농산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26조에 따른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신청)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3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공주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지원결정) 제29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31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장은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3조(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공주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주시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우수농산물의 기획 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7. 지역의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 및 관계 소비시장 확대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 및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 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 먹거리 사업단은 이 조례에 따라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기 까지 존속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0-1686호

2020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0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0. 9. 7. ~ 10. 6. 오전 10시~오후 4시(수.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일자·구역 및 장소 : 별첨1

2.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전화 041-840-8296)

2020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

시·군명	검사일자		검사장소	검사대상 지역 (읍면동)	비고
공주시	9. 7.(월)	10:00~16:00	유구읍 행복지원센터	유구읍 일원	
	9. 8.(화)	10:00~12:00	이인면 행복지원센터	이인면 일원	
		14:00~16:00	탄천면 행복지원센터	탄천면 일원	
	9.10.(목)	10:00~12:00	계룡면 행복지원센터	계룡면 일원	
		14:00~16:00	반포면 행복지원센터	반포면 일원	
	9.11.(금)	10:00~12:00	의당면 행복지원센터	의당면 일원	
		14:00~16:00	정안면 행복지원센터	정안면 일원	
	9.14.(월)	10:00~12:00	우성면 행복지원센터	우성면 일원	
		14:00~16:00	사곡면 행복지원센터	사곡면 일원	
	9.15.(화)	10:00~12:00	신풍면 행복지원센터	신풍면 일원	
	9.17.(목)	10:00~16:00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산성시장 일원	
	9.18.(금)	10:00~16:00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웅진동 일원	
	9.21.(월)	10:00~12:00	중학동 행복지원센터	중학·금학동 일원	
		14:00~16:00	옥룡동 행복지원센터	옥룡동 일원	
	9.22.(화)	10:00~16:00	신관동 행복지원센터	신관·월송동 일원	
	9.24.(목)	10:00~16:00	웅진동 행복지원센터	**검사 누락자**	
	9.25.~10.6.	10:00~16:00	소재장소 검사	**검사 신청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주1) 해당지역 검사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일정의 장소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주2) 소재장소 검사 신청 : 8. 28(금)까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 별첨 3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처리기관: 시 、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공주시 고시 제2020-137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공주 월송지구 B-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법인명칭 :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 이창하, 이창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27번지

4.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4,756.3㎡
- 건축규모 : 주4동, 부20동, 지하1/지상20층, 376세대
- 건축면적 : 3,545.7448㎡
- 연 면 적 : 56,841.3027㎡
- 주택형별 : 80형 80.0037㎡(136세대), 84A형 84.9645㎡(158세대)
  84B형 84.9422㎡(80세대), 84C형 84.8644㎡(2세대)
- 사업기간 : 2020. 08. 31. ~ 2023. 03. 02.

5. 의제사항

- 건축법(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 도로법(도로점용허가)

공주시 고시 제2020-138호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옥룡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사업명	유 형	위 치	면적(㎡)	비고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 르네상스	주거지지원형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버드나무길 일원	93,421	

2) 사업 기간 : 2018년 ~ 2021년

3)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



2. 계획의 세부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 비전 :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공산성 마을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 르네상스”
- 목표 : 주민복지, 동네일자리 창출, 마을경쟁력 강화, 마을공동체 강화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마중물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5,900	공주시, 국토부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마을주차장 및 건축불가필지도로 확보사업	2,500	공주시, 국토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제공
	마을 목욕탕 운영사업	400	공주시, 국토부	주거환경 개선
	안심골목길사업	800	공주시, 국토부	보행환경정비 및 안심시설물 설치
	동네 공유상가 운영사업	500	공주시, 국토부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주거 지원 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500	공주시, 국토부	집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	2,100	공주시, 국토부	진입로 확포장 및 주자창 조성
지역 특성화 사업	버드나무 공동체가로 활성화사업	900	공주시, 국토부	특화가로 조성 및 보행환경정비
	백제테마가로사업 (무령왕길)	1,000	공주시, 국토부	특화가로 조성 및 보행환경정비
	마을축제 특화사업	300	공주시, 국토부	도시환경매력화 및 공동체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400	공주시, 국토부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400	공주시, 국토부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0	공주시, 국토부	주민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 부처협력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공산성 은개골 정비사업	6,300	공주시, 문화재청	공산성 은개골 일대에 은개골공원 조성 및 접근성 개선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600	공주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을 활용한 미술공간 조성, 공고예술담장 만들기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	공주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단위 기업 육성 지원,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등

- 지자체사업 (기투자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600	공주시, 문화재청	공용주차장 조성

- 민간·공공투자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2,0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민간 자율주거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1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집수리 지원
마을전력기반시설 조성사업	1,0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AMI 구축, 공공건축물 태양광 사업 등

3) 마중물사업 단계별 재원투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계	단계별 재원투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백만원)				
	기투자	2018	2019	2020	2021
29,700	2,600	5,900	7,700	7,200	6,300

※ 재원투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파급효과 및 성과지표

-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 주민편의시설 수, 주차가능대수, 분리수거함, 택배보관함, 안전시설물 설치 등
- 마을일자리 : 일자리 창출 인원수, 상인/청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건수 등
- 마을경쟁력 : 공산성 어울림센터, 옥상 층에 설치계획인 태양광 패널 개수 등
- 마을공동체 : 공산성 어울림센터 주민교육단, 마을방범대, 공유상가, 집수리지원단, 주민공모사업단 등 주민조직 수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주차장, 도로 개설	마을주차장 조성 .및 건축불가필지 도로 확보사업	충남 공주시 옥룡동 393-8, 393-9, 393-10, 393-11, 393-39, 394-2 총 6필지	28억원 (국비)	주차장 12면, 도로개설	2018~2021
도로 확폭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은개길	20억원 (국비)	총 320m, 폭12m 확장	2019~2021
문화 시설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충남 공주시 옥룡동 버드나무2길 공영주차장 부지	50억원 (국비40억, 지방비10억)	지하1층~ 지상4층	2018~2021
복지 시설	마을목욕탕 조성사업	충남 공주시 옥룡동 버드나무1길 36 마을회관	4억원 (지방비)	마을회관 건물 활용	2019~2021

5. 행위 제한 적용지역 : 해당사항 없음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1) 정량적 평가 : URMS(Urban Regeneration Monitoring System)활용 모니터링

2) 정성적 평가 : 외부평가 자문단 구성(공주시,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1) 도시재생 전담조직

-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의 총괄 역할 수행

2) 도시재생 추진단

-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뉴딜사업 전담

3)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 다양한 세부사업과의 연계·조정 시에 각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

4) 옥룡동 주민협의체

- 2015년부터 구축된 양질의 공동체 자산 활용
- 주민, 상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유도

5)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민간과 행정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방향, 지역의 여건, 현안문제의 우선순위,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사업 추진 지원 등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

6) 옥룡동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 주민설명회, 간담회, 워크샵 등의 소통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여건, 재생목표, 현안문제의 순선운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반영여부를 결정

8.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127)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고시 제2020-13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배실로 137 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8.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 56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배실로 137	20200813	신규	20090825	마을 옛 지명인 공주시 가재울과 부여군 정배실을 조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88-14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19 (신관동)	20200813	신규	20100202	행정구역 명칭 반영	
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92, 9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206-19	20200813	신규	20100112	경천리에서 계룡산 신원사로 가는 길로 신원사로라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55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228-6	20200813	신규	20100112	내흥리의 예전 명칭 왕흥과 구왕~중장의 장악고개를 관통하는 도로로, 왕흥장악이라 부여	
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33-36, 3-10, 율정리 345-2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443-14	20200813	신규	2010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33-3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443-16	20200813	신규	2010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133-3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443-18	20200813	신규	20100112	신관동 전막을 기점으로 하여 의당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의당로로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1-9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차동로 2150	20200813	신규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95-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739	20200813	신규	20090710	지역특성 반영(충남 대표 산맥로 반영)	
10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5-16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8-32 (상왕동)	20200813	신규	2010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19-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남두머리길 90-3	20200813	신규	20110506	냇물이 흐르는 남쪽의 계류 부근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남두머리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08-2, 308-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평길 261	20200813	신규	20100112	조선시대 초 이마을에 단평역이 있었다 하여 단평길로 부여	
1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5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2길 23-435	20200813	신규	2010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1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236-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독안동길 17	20200813	신규	20100112	이곳에 지형이 선비가 책상에 앉아서 글을 읽은 형상이라 하여 독안동길로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 52-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마새길 17-51	20200813	신규	20100112	마을이 골짜기에 있어서 옛날에 여기를 오르다 보면 말도 숨이 차서 꼭 물을 마시고 쉬게 하였다는 마을이어 마수라고 부르던 것이 마새로 변했다 하여 마새길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296, 29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2길 227-2	20200813	신규	20100112	명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명곡2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188-10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산막골길 45	20200813	누락	20100112	예전에 산막이 있었다 하여 산막골길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52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선근리2길 1	20200813	신규	20100112	선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서당과 유사한 기관이 있었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송학리 37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소라실2길 20-2	20200813	신규	20100112	마을의 형태가 산을 여러 겹으로 둘러쌓고 있어서 소라의 속과 모양이 같은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2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327, 328-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저원길 66-10	20200813	신규	2011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307-7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 (금흥동)	20200813	신규	20100202	도로의 끝지점에 연수원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연수원을 가는길이라 인식, 연수원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386, 387-1, 387-2, 387-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외송회동길 11	20200813	신규	2011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216-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당길 217	20200813	신규	20100112	예전 요룡리를 부르던 명칭으로 옛 명칭을 살려 요당길로 부여	
24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유룡리 671-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유룡터골길 76	20200813	신규	20100112	옛날 풍수가들이 유룡리에서 가장 좋은 터를 갖고 있는 곳이 이 지역이라 한결같이 말한데서 비롯되어 터골길이라 부여 후 행정구역 명칭 첨가	
2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34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임금봉길 109	20200813	누락	20100112	임금이 앉았던 바위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94-4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164-12	20200813	신규	2010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어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54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큰삼밭골길 35	20200813	신규	20100112	커다란 삼밭이 있는 곳으로 여기서 나는 삼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여 큰삼밭골길로 부여	
2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산 57-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골길 197	20200813	신규	2010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617-2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41-11 (금흥동)	20200813	신규	2010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3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617, 619-1, 619-2, 62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효자길 278-3	20200813	신규	20100112	옛날 효자가 많이 살았다는 지역명을 활용하여 효자로로 부여	

공주시 고시 제2020-14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율속길 90 외 60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8.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정안면 북계리 61	정안면 율속길 90	8.13	허가과-43930(20.7.24)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2	정안면 대산리 113	정안면 가락골길 57-46	8.13	허가과-44273(20.7.28)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3	공주시신관동 205-9	공주시 매산동길 7-2	8.13	허가과-44270(20.7.28)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4	공주시 신관동 205-10	공주시 매산동길 9	8.13	허가과-44270(20.7.28)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5	공주시 봉황동 269-3	공주시 봉황산1길 39	8.13	허가과-44270(20.7.28)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6	공주시 금학동 64	공주시 우금티로 591-2	8.13	허가과-44314(20.7.28)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7	반포면 송곡리 54	반포면 외송2길 42	8.13	허가과-44390(20.7.28)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8	공주시 신관동 650-9	공주시 번영1로 55	8.13	허가과-46603(20.8.6)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9	반포면 온천리 296	반포면 금벽로 215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0	반포면 온천리 297	반포면 금벽로 2155-1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1	반포면 온천리 368	반포면 금벽로 2234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2	반포면 학봉리 268	반포면 동학사1로 141-8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3	반포면 마암리 12-12	반포면 마티고개로 140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4	반포면 송곡리 343	반포면 송곡로 222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5	반포면 온천리 93-16	반포면 송곡로 25-4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6	반포면 봉곡리 407-1	가마봉길42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7	반포면 공암리 166	공암막골길28-7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8	반포면 공암리 365	공암장터길15-6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19	반포면 마암리 128-5	마암안산길4-11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0	반포면 송곡리 68-1	외송2길22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1	반포면 학봉리 485-1	제석골길18-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2	정안면 화봉리 193	차령로287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3	정안면 고성리 352	고성1길274-47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4	정안면 고성리 358	고성1길274-36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5	정안면 내촌리 275-5	고잿골길84-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6	정안면 전평리 197	관방삼밭실길111-56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7	정안면 대산리 130-3	구름뱅이길32-2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8	정안면 대산리 150-3	구름뱅이길32-2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9	정안면 장원리 308-1	구억말길64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0	정안면 장원리 342	구억말길78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31	정안면 평정리 620	느진묵길229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2	정안면 사현리 248-9	되재1길43-8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3	정안면 장원리 112	둠벙이골길46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4	정안면 장원리 118	둠벙이골길3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5	정안면 평정리 산 105-1	사직골길77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6	정안면 평정리 583-6	사직골길7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7	정안면 상룡리 238-1	상룡길194-1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8	정안면 대산리 627	소랭이길150-6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39	정안면 대산리 634	소랭이길150-1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0	정안면 월산리 273	월산송정길115-27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1	정안면 장원리 산 2-1	장원오얏골길55-12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2	정안면 장원리 산 2-1	장원오얏골길55-1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3	정안면 사현리 374-5	정안중앙길229-9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4	정안면 어물리 156-4	할미당길43-4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5	정안면 월산리 212	해평길73-14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46	정안면 문천리 245	허수아비길86-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7	정안면 산성리 22-2	허수아비길244-2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8	우성면 봉현리 636	남천새울길54-4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9	우성면 내산리 573-12	내산중말길7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0	우성면 반촌리 산 28-2	동곡길1-19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1	우성면 동곡리 129-1	동곡길50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2	우성면 동대리 179	동대리길67-1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3	우성면 동대리 157-5	동대리길99-6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4	우성면 목천리 800	목천2길115-1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5	우성면 한천리 산 11	무성산로714-3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6	우성면 봉현리 245-2	무재길23-1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7	우성면 반촌리 137-2	반촌길43-1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8	우성면 신웅리 112-10	신웅중앙길15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9	우성면 내산리 513	정사골길37-14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60	유구읍 명곡리 40	명곡2길36-20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61	유구읍 녹천리 13-7	중앙1길159	8.13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